

< 부 록 >

##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

- 이 내용은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정리한 것임.
-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과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.



##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목재교육전문가 제도	(신설)	<input type="checkbox"/>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	목재이용법 ('20.1.9) 산림청 목재산업과 (042-481-8875)
②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무실 구비 ※ 사무실을 별도 정의하지 않는 경우 「건축법」에 사무용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음 [법제처 법령해석례 10-0447] 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 ○ 1천만원~3천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무실 구비 요건 완화 ○ 사무기자재를 건축물로서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 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본금 기준 삭제	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9.7.9)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(044-481-1841)
③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	(신설)	<input type="checkbox"/>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 의무화 <input type="checkbox"/>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	산림보호법 ('20.6월) 산림보호법 산림병해충 방제과 (042-481-4076)
④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	<input type="checkbox"/> 인력기준 ○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전문가를 배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인력기준 완화 ○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 가능	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9.7.9)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(044-481-184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⑤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	(신설)	<input type="checkbox"/>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위한 판정표 및 해제절차 마련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 시 신설	산림보호법 ('20.초)
			산림청 산사태방지과 (042-481-8844)
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·실태조사 판정표 개선	<input type="checkbox"/>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 일원화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조사,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 <input type="checkbox"/>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 시 반영	산림보호법 ('20.초)
			산림청 산사태방지과 (042-481-8844)